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
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및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(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)

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

나.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(안 제34조제1항제3호)

용역계약 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

제34조제1항제3호 중 “공사감리의 업무”를 “공사감리의 업무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)	제17조(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7. <u>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</u>
7. (생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지역기업의 우대) ① 법 제53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제34조(지역기업의 우대) ① ---- ----- ----- -----

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· 2. (생략) 3. 용역계약: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과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, <u>공사감리의 업무</u>에 관한 용역계약	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사감리의 업무</u>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<u>건설엔지니어링 업무</u>----- --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	
연 락 처	(042) 201 - 3698